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함(안 제86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